

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 04. 20.)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광용

#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04. 0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04. 12.

## 2 제안이유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교육장 조성에 따른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여 관광자원화
- 노후화된 보건기관(지소2개소, 진료소2개소)에 대해 2013년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
  - 일부 시설은 벽면균열 등 노후화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
- 신원면 덕산리 1477 -3번지(잡:2,624㎡)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서 현재 대한사료(주)의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매각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3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m<sup>2</sup>/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	기준가격	비고
계		2건		21,215.7	697,9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부지	토지 / 건물	거창군 개명리 2051-13번지 외 1필지	계	10,475.7	361,662	
			토지	9,908	212,032	
			건물	567.7	149,630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 부지	토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76-1번지 외 5필지	계	10,740	336,251	
			토지	10,740	336,251	

## 4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m<sup>2</sup>/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처분시기	재산소유자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3	잡	2,624	2,624	2012	거창군	대한사료(주)

## 5

##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6

## 검토의견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의 1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 백두대간 권역의 경관과 생태 등 자연환경을 활용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거점으로 육성하여 산림이용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및 웰빙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13년부터 2015년까지(3년간) 계획으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안내센터, 등산학교, 게스트 하우스, 휴양캠핑장 설치, 트레일코스,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 ☞ **사업개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 예산확보대책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건기관 이전·신축 사업안**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체감으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상면 무촌리 576-1번지의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201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부지 미확보 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3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300백만원을 요구한 상태임.

- **공유재산 매각 건**은 신원면 덕산리 1477-3번지 2,624㎡(잡종지)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으로서 현재 대한사료(주)에서 대부하여 축산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매각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

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